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 신안산대학교 |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운영 규정 | 규정번호 | 2-2-2 |
| | | 제정일자 | 2012. 3. 5. |
| | | 개정일자 | 2024.3.20. |
| | | 책임부서/팀·계 | 교무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 책임시간) ① 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. <2013.3.4. 2013.8.27., 2014.2.27., 2015.8.19., 2015.12.1., 2016.12.6., 2017.8.16., 2018.7.2., 2019.2.18., 2019.7.17., 2022.3.10., 2022.9.19., 2023.10.1., 2024.2.28. 개정>

[표1]

| 직위 | 책임시간 |
|-----------|------|
| 교수 | 9 |
| 부교수 | 10 |
| 조교수 | 11 |
| 조교수(강의전담) | 12 |
| 조교수(산학협력) | 12 |
| 조교수(외국인) | 12 |

[표2]

| 직위 | 강의시수 |
|----------|--------|
| 겸임·초빙 | 9시간 이내 |
| 강사·기타 교원 | 6시간 이내 |

② <2013.8.27., 2018.7.2., 2019.7.17.삭제>

③ <2019.2.18. 삭제>

④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.

⑤ 시험시간은 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교과목의 시수를 인정한다.

⑥ 책임시수는 직책과 직위 중 낮은 시수를 적용한다. <2013.3.4. 신설> <2022. 8. 11. 개정>

⑦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.

<2015.8.19.신설>

⑧ 채용형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기본시수는 강의시간 8시간과 산학협력활동 4시간(필수)으로 한다. <2016.12.06.신설>

⑨ 겸임·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12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고 강사·기타교원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9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.<2019.7.17.제정, 2024.2.28. 개정>

⑩ 직책에 관한 시수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<2024.2.28. 제정>

제3조 (팀티칭 교과목) 2인 이상이 담당하는 팀티칭 교과목은 시간수를 담당과목 교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제4조 (강사료의 지급)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, 시간강사는 강의 시간수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③ <2019.2.18. 삭제>

④ 강사료 책정은 매년 1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강의의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2022. 11. 24. 개정>

⑥ <2021.12.23., 2022.03.31., 2022.06.02. 개정><2022. 9. 19. 삭제>

제5조 (강사료의 계산) 강사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하고 공휴일이나, 휴강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제6조 (강사료 지급일) ① 강사료는 4주단위로 지급하되 보강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3주로 계산한다.

② 강사료 지급일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신안산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규정) 이 규정은 2012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강의 책임시간)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강의 책임시간)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